



법인 신고기한 3월31일... 신고대상 법인 85만여개

법인세 신고 대상은 2019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원칙적으로는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85만여개로 지난해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서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5월4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 '대구·청도지역'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결정

국세청은 3월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기한을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에 한해 5월4일(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와 경북 청도에 소재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당초 신고기한 5월4일에서 1개월 연장된 6월1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 연장을

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월급 3천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 소득세 더 많이 떼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근로소득공제액 한도(2000만원)에 맞춰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조정된다.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매달 근로자 봉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를 근로자 개인 급여수준·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미리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월급 2800~4500만원, 4500만원 초과 구간의 간이세액표가 3단계로 쪼개졌다.

월급 2800~3000만원 구간은 작년과 동일한 세액계산법[월급여 1000만원 경우의 세액+658만5600원+(2800만원 초과금액×98%×40%)]을 따른다. 4인 가구 기준, 월급 290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은 약 819만원이다.

원천징수액이 달라진 구간은 월급 3000만원을 넘었을 때다. 월급 3000~4500만원 구간은 이 세액계산법[월급여 1000만원 경우의 세액+738만5600원+(3000만원 초과금액×40%)]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월급 3500만원 근로자(4인 가구)라면 작년에 1054만원의 소득세가 월급에서 빠져나갔는데, 올해엔 1060만원이 월 소득에서 차감된다. 같은 기준으로 월급여가 4500만원일 땐 소득세는 1446만원에서 1460만원으로 오른다.

월급 4500만원 초과 구간에선 이 계산법[월급여 1000만원 경우의 세액+1338만5600원+(4500만원 초과금액×42%)]으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된다. 월급여가 1억원인 근로자(4인 가구)는 작년보다 약 70만원이 오른 3770만원의 소득세를 떼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 188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급에서 세금을 떼이지 않는다. 2인 가구는 134만원,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가구는 106만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서 차감되는 소득세는 없다.

이들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등으로 소득금액을 빼면 결정세액은 미미(소득부징수 적용)하다. 이렇기에 굳이 환급받을 세금을 댈 필요가 없는 것이다.